보건복지부 | 보도자료 | 대체불가 대한민국

보도시점 2026. 11. 23.(월) 브리핑 시작 (13:30) 이후 | 배포 2026. 11. 23.(월)

생계급여 선정기준 2030년까지 35%로 인상 및 중증장애인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추진

- '모두의 복지' 위한 제4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7~2029) 수립·발표 -

- 'K자형 양극화'에 대응, 사회 안전매트 강화를 위한 주요 과제 추진 -

< 'K자형 양극화' 대응을 위한 제4차 종합계획 7대 추진과제 >

1 [보장수준 확대] 보장 수준은 높게, 제도 밖 빈곤층은 더 넓게 포괄

❶ **생계급여 선정기준 2028년부터 매년 1%p씩** 기준 중위소득 **32% → 35%까지 인상**

❷ 건강검진 항목 확대,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 등 **의료급여와 건강보험과의 보장·보상 격차 개선**

❸ **주거급여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50%까지 상향,** 기준임대료 인상

2 [사각지대 해소] 빈곤 예방·회복 지원 등 제도 밖 보호체계 강화

❹ **중증장애인 가구 대상 생계·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

- 생계급여는 '30년 75세 이상 노인 가구 대상, 의료급여는 의료·돌봄 필요 높은 가구 대상 추가 완화 검토

❺ **즉각적 위기 해소를 위해 긴급복지 "우선드림(30만원)" 실시,** 반복 수급 가구 통합사례관리 연계 및 소득·재산기준 완화 등 검토

3 [빈곤 탈출 지원] 근로·자산형성·탈수급을 잇는 자립 경로 구축

❻ 취업 등으로 소득이 늘어 선정기준을 초과해도 일정 기간 의료급여를 유지하는 **'자립이행 특례' 도입 검토**

❼ 청년내일저축계좌 등 **자산형성 규모 확대** 및 **탈수급 지원금** 지급 검토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1월 23일(월) 제81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 장관)의 심의·의결을 거쳐, 향후 3년간의 기초생활보장제도 정책방향과 개선 과제를 담은 **「제4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7~2029)」을 발표**하였다.

○ 이번 계획은 기초생활보장 제도 발전 포럼('26.1~10월, 6회), **급여별 기본계획, '2024~2026년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및 평가 연구',** 전문가·국민 의견 수렴 위한 **공청회**(10.28) **등**을 토대로 수립되었다.

□ 최근 소득·자산 격차가 확대되고, 계층 간 생활여건이 벌어지는 **'K자형 양극화' 가 심화**되고 있다.

○ **상대적 빈곤율**은 2021년 14.8%에서 **2024년 15.3%로 높아졌으며**, 2022년 빈곤율과 빈곤갭*(빈곤층의 평균 소득과 중위소득 50% 이하 빈곤선의 소득 차이) 모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높았다.

* ('22) (빈곤율) 한국 14.9%, OECD 평균 11.5%, (빈곤갭) 한국 33.2%, OECD 평균 29.5%

○ 실태조사 결과, 수급자, 차상위계층을 포함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전체 빈곤층**은 2021년 325만 명에서 **2024년 394만 명으로 증가**하였다.

- 생계·의료·주거·교육·등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도 2021년 227만 명에서 **2024년 257만 명으로 증가**하였다.

□ 이에 보건복지부는 제4차 종합계획을 통해 **국민의 기초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 과제**들을 추진할 계획이다.

① **급여별 선정기준과 보장 수준을 확대**하여 빈틈없는 **사회 안전매트로**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한다.

② **제도 밖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빈곤을 줄이고, **갑작스러운 위기에 처한 가구를 신속히 지원**해 위기 상황이 빈곤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는다.

③ **일해서 번 소득이 저축과 자립**으로 이어지도록 하고, **취업 후에도 일정 기간 필요한 지원을 유지하여 안정적 빈곤 탈출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다.

④ 현장 대응력을 강화할 수 있는 **효율적 운영체계를 구축**하고, 변화하는 인구·사회 구조를 반영해 **제도의 중장기 발전 방향도 마련**해 나간다.

□ **제4차 종합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기초생활보장 급여 선정·보장기준 확대

○ **(생계급여) K자형 양극화** 등 변화하는 빈곤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2028년부터 매년 1%p씩** 인상하여 **'기준 중위소득의 35%' 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수급자**에게 생계급여를 지원하고 **수급자의 최저생활 보장**을 **강화**한다.

* ('26~'27) 기준 중위소득의 32% → ('28) 33% → ('29) 34% → ('30) 35%

< 2027년도 생계급여 최대지급액 >

(단위: 원/월)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2027년	**87만 5,533**	**143만 3,806**	**182만 9,789**	**221만 7,563**	**258만 166**	**292만 1,344**
2026년	82만 556	134만 3,773	171만 4,892	207만 8,316	241만 8,150	273만 7,905

※ 개선 사례(구체적인 내용은 【붙임3】 1. 참고)

▲ (현행) 1인 가구 A씨는 생활비가 빠듯하지만, 월 소득 인정액이 90만 원으로 생계급여 선정기준(87만 6천 원)을 소폭 초과하여 생계급여를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

↓

▲ (개선) '30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35%까지 인상됨에 따라, 생계급여 최대지급액이 1인 가구 기준 95만 8천 원까지 인상되어 생계급여 월 5만 8천 원의 생계급여를 새로 지원받아 식료품 구입과 공과금 등 생활비 부담 완화 가능

※ '27년 기준 중위소득 기준으로 산정한 예시

○ **(의료급여) 예방·관리부터 치료 후 일상 복귀까지 지원**을 **강화**한다.

- 질병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해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와 건강보험 가입자와 검진 항목 간 차별 해소***를 추진한다.

* 혈액·요 검사, 흉부엑스레이 검사 등 도입

- 입원 중 간병 부담을 덜기 위해 2027년 하반기부터 의료·간병 필요도가 높은 수급자에게 **요양병원 간병비**를 **지원**한다.

- 사회적 입원 개선 및 퇴원 수급자의 안정적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 방문 건강관리, 도시락 제공 외 고립 방지를 위한 **사회참여** 프로그램, **생애 말기 케어** 등 **재가의료급여 서비스**를 **확대·개편**하고 재가의료급여 지원 종료 후에도 필요한 지원이 이어질 수 있도록 **통합돌봄 체계 내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지속 돌봄**을 제공한다.

※ 개선 사례(구체적인 내용은 【붙임3】 2. 참고)

▲ (현행) 66세 의료급여 수급자 B씨는 허리·무릎 통증으로 병원을 자주 찾으나, 운동이나 생활습관 관리 등 일상 건강관리에 어려움을 겪음. 이후 뇌졸중으로 입원하여 간병비 부담이 커지고 퇴원 후 재활치료도 이어가지 못함

↓

▲ (개선) B씨는 확대된 건강검진과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을 통해 일상 속 질환 관리방법을 배우고, 입원 시 의료·간병 필요도에 따라 간병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퇴원 후에도 지역책임의료기관에서 재활치료를 받아 일상 복귀가 가능해짐

○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을 현행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에서 향후 **50%**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하여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2027년도 기준임대료**를 2026년 대비 **1.2만 원~5.0만 원**(3.3~12.4%) **인상**하는 등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기준임대료**를 **지속 현실화**한다. 자가가구의 집수리 지원 한도와 보수 주기도 현실에 맞게 개선한다.

< 2027년도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

(단위 : 만 원/월)

구분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인천)	
1인	38.1	(+1.2)	31.3	(+1.3)
2인	43.1	(+1.7)	35.2	(+1.7)
3인	51.4	(+2.2)	42.2	(+2.1)
4인	59.6	(+2.5)	48.8	(+2.5)
5인	61.8	(+2.7)	50.5	(+2.6)
6인	73.1	(+3.2)	59.9	(+3.1)

* 괄호는 '26년 대비 증가액
* 가구원 수가 7인의 경우 6인 기준임대료와 동일하고, 가구원 수가 8~9인의 경우 6인 기준임대료의 10%를 가산

○ **(교육급여) 2027년 학생 1인당 지원하는 교육활동지원비**를 초·중·고 모든 학교급에서 **2023년 계측 최저교육비 대비 100% 수준으로 인상**한다. **2028년 신규 수급자**부터는 **교육급여와 이용권(바우처)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한다.

< 최저교육비 대비 교육활동지원비 충족율 >

(단위: 천원/연)

구분	최저 교육비 ('23)	'24		'25		'26		'27	
		지원액	충족률	지원액	충족률	지원액	충족률	지원액	충족률
초	461	461	100%	487	106%	502	109%	513	111%
중	679	654	96%	679	100%	699	103%	714	105%
고	944	727	77%	768	81%	860	91%	945	100%

2 제도 밖 빈곤을 줄이는 보호체계 강화

○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 **생계·의료급여** 모두 **2027년 하반기**부터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가구의 **부양의무자 예외 기준*을 전면 폐지**하여 **사각지대를 완화**한다. 이를 통해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수급을 받지 못했던 **2만 가구가 추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

* 부양의무자(생계나 주거를 달리하는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연 소득 1.3억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 초과 시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 더하여, 생계급여는 초고령·독거 등 **부양 필요도를 고려**하여 **2030년까지 75세 이상 노인 가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를 검토한다.

- 의료급여는 **의료·돌봄 필요가 높은 가구***에 대해서는 **고소득·고재산**(예: 연 소득 1.3억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 초과)을 보유한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미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 (검토 예시) 중증·희귀질환, 장기요양 1·2등급 노인이 포함된 가구

※ 개선 사례(구체적인 내용은 【붙임3】 5. 참고)

▲ (현행) 등록 중증 장애인 E씨 가구(2인)의 월 소득은 120만 원으로 생계·의료급여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지만, 부양의무자인 아버지 B씨와 어머니 C씨가 노후 거주용 주택(12억 초과)을 가지고 있어 생계·의료급여를 수급하지 못하는 상황

↓

▲ (개선) '27년 하반기부터 중증 장애인이 포함된 가구의 생계·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에 따라,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게 되어, E씨 가구(2인)는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능

○ (재산의 소득환산제도 개선) **실제 생활여건을 반영**하여 재산의 소득환산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 **자동차**는 현재 배기량·연식·차량유형, 가구유형 및 규모 등에 따라 달리 적용하던 것을 **차량가액 중심으로 단순화**하고, 소득환산율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단, 국민 수용성과 제도 형평성을 고려하여 **고가·사치성 차량**은 **수급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 개선 사례(구체적인 내용은 【붙임3】 6. 참고)

▲ (현행) 자동차 기준은 배기량 2,000cc미만의 차량으로 연식이 10년 이상이거나 차량가액이 500만 원(공시)인 경우에 한하여 월 4.17%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하고 있어, 노인 1인 가구가 소유한 2015년식 그랜저(2,359cc)의 가액이 400만 원인 경우 차량가액이 100% 월 소득으로 환산되어(소득인정액 400만 원) 생계급여 탈락

↓

▲ (개선) 자동차 소득환산 기준을 차량가액 중심으로 단순화하여 월 4.17%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할 경우 자동차의 재산이 월 166,800원으로 환산되어 노인 1인 가구인 경우 약 70만 원의 생계급여 수급 가능

- **주택**은 **소득 환산율을 현행 1.04%보다 완화**하고, 장기적으로 일정 한도액까지 소득산정 제외를 추진하여 수급자의 **주거 안정성을 확보**한다.

○ (신청주의 한계 보완) **위기 상황에서 본인이 신청하기 어렵거나, 신청 동의를 받기 어려운 경우,** 담당 공무원이 **생계급여를 직권신청**하여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 현장에서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직권신청 요건 및 절차 등 세부 추진 방안을 마련**하고, 직권 신청하였으나 탈락한 가구 중 담당 공무원이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통해 탄력적으로 보호**할 계획이다.

※ 개선 사례(구체적인 내용은 【붙임3】 7. 참고)

▲ (현행) 자살시도자 G씨는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고, 최근 소득을 상실한 상황으로 지방정부에서 생계에 어려움이 있음을 확인하여도 대상자에게 생계급여 신청에 대한 동의를 받기 어려워 직권신청할 수 없는 상황

↓

▲ (개선) 생계급여가 필요한 경우 수급권자의 동의 없이도 직권신청을 통해 소득·재산 등 조사 후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생계급여 지급 가능

○ (위기가구 긴급복지 확대) **즉각적인 위기상황 해소 지원**이 필요한 가구에 **읍·면·동에서** 긴급복지 생계지원 중 **소액**(30만원)을 **즉시 지급**하는 **우선드림을 신설**하고, **소득·재산기준 등 제도 개선을 검토**한다.

※ **개선 사례**(구체적인 내용은 【붙임3】 8. 참고)

▲ (현행) 58세 H씨는 운영하던 식당을 폐업한 뒤 소득이 끊긴 1인 가구로, 오래 전부터 뇌전증을 앓아 지속적으로 항경련제를 복용해 왔는데, 식당 폐업 이후 병원에 가 진료를 받고 처방약을 살 돈이 없어 약이 떨어질 위기임

↓

▲ (개선) '27년부터는 H씨가 행정복지센터에 도움을 요청하면, 읍·면·동 담당자가 생활실태에 대해 현장확인을 거쳐 당일 우선드림 30만원을 지급하여 병원진료를 받고 약이 떨어지기 전에 처방약을 구입해 치료를 중단없이 이어갈 수 있음

○ **(자립이행 특례 도입 등 검토)** 소득이 늘거나 수급 자격이 바뀌어도 의료비 부담으로 필요한 치료를 미루지 않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 우선 **근로·사업소득**이 늘어 **수급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일정 기간 의료급여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자활 가능성이 높은 청년부터 **'자립이행 특례' 도입**을 우선 검토한다.

  * (美) 취업 후 소득 발생하더라도 일정 기간 메디케이드(Medicaid) 혜택 연장

- 또한,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다제약물관리, 건강생활실천지원금** 등을 적용하여 자격이 변동되어도 중단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 **개선 사례**(구체적인 내용은 【붙임3】 9. 참고)

▲ (현행) 장애와 관련된 질환으로 정기 진료를 받는 28세 의료급여 수급자 I씨는 취업 기회가 생겼으나, 취업 후 소득이 증가해 의료급여 자격을 잃을 경우 병원비·약값 부담이 커질 것을 걱정

↓

▲ (개선) '자립이행 특례' 도입 시, I씨는 취업으로 소득이 증가하더라도 일정 기간 의료급여를 계속 지원받아 필요한 치료를 이어가며 안정적으로 자립 준비 가능

3 근로를 통한 실질소득 증대 및 자립기반 강화

○ **(청년층 자립 기반 강화)**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청년에게 본인 몫의 생계급여를 직접 지급**을 검토한다. **근로활동을 통해 증가한 소득을 탈수급 및 미래 준비에 활용**토록 자산형성지원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 또한 청년층 특화 자활지원도 강화한다. 청년층이 많은 도시지역 중심으로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 참여자를 확대**하고, 자활참여 청년들이 근로 경험을 다양하게 쌓을 수 있도록 **일 경험기관 발굴 지원도 강화**한다.

○ **(중장년층 지원 확대)** 중장년 **참여자의 욕구와 직무경험** 등을 파악하여 **특화 자활근로 모델***을 개발하여 민간시장 취·창업 지원을 확대한다.

* (예시) 시설관리·환경정비 등 공동작업형 업종, 1인 가구의 지역사회 참여형 사업단 모델 등

- 또한 중장년층이 근로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근로소득의 일정비율을 소득 산정 시 제외하는 근로소득공제 확대도 검토한다.

○ **(맞춤형 자활지원체계 개편)** 자활지원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맞춤형 자활지원 개편은 **2028년 본격 시행**을 위해 **시범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참여자 **역량에 맞는 지원**을 통해 **자활의지를 높이고,** 더 나아가 **취·창업** 등 자립을 더욱 효과적으로 지원한다.

※ **개선 사례**(구체적인 내용은 【붙임3】 10. 참고)

▲ (현행) 조건부 수급자 J씨는 장기간 빈곤과 반복되는 취업 실패로 자활 의지가 낮아진 상태였으나, 자신의 의지나 역량과 관계없이 음식점 사업단에 배치되었고 조건 이행만을 위해 자활근로를 지속하며 자활의지는 회복하지 못한 채 장기 참여 중

↓

▲ (개선) 음식점 사업단에서 근로하고 있던 J씨는 참여자 자립역량·환경 확인을 거쳐 근로준비형 사업단으로 재배치되어 사회참여 경험과 심리지원서비스 연계를 통해 자활의지를 회복하고, 취업도전형으로 단계적으로 이동하여 취업 준비 중

○ **(자산형성지원 강화)** 자산형성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을 위해 **정부지원금 외 추가 적립금**(희망저축계좌Ⅰ,Ⅱ)과 **탈수급 지원금**(희망저축계좌Ⅰ, 청년내일저축계좌)을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한 **희망저축계좌Ⅰ,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가입자 규모도 확대**한다.

- 이와 더불어 가입 **청년들이 생활고 등으로 인해 계좌 중도해지 상황에 내몰리지 않도록 1:1 사례관리를 실시**하며, 청년내일저축계좌 본인 적립요건 완화, 압류/가압류 시 특별적립중지 등 **다양한 중도해지 방지 지원방안**을 검토한다.

※ **개선 사례**(구체적인 내용은 【붙임3】 11. 참고)

▲ (현행) 청년내일저축계좌 참여자 K씨는 다니던 회사가 갑자기 폐업하여 실직하자 계좌에 적립금을 납입할 수 없었고 이후에는 대출금을 갚지 못해 계좌까지 압류되자 결국 계좌를 중도해지

↓

▲ (개선) 실직 후 계좌에 적립금을 납입할 수 없게 되자 사례관리 대상자로 발굴되어 1:1 사례관리를 통해 관련 금융서비스를 연계받게 되었고, 대출금 연체로 계좌 압류 시에도 특별적립중지가 가능하여 계좌를 중도해지 않고 유지 가능

○ **(자활기업 지원) 향후 5년간 자활기업 500개 창업을 목표**로 예비 자활기업 재도입 등 **초기 창업지원을 강화**하고, 전국·광역 단위 모델 등 규모화가 가능한 사업모델을 개발하는 등 **창업 컨설팅도 확대**해나간다.

- 또한, **사회연대경제조직으로서 자활기업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대국민 인지도를 높이고, **자활기업 생산품 공동브랜드를 마련**하여 자활기업의 판로구축과 **홍보를 강화**한다.

4 기초생활보장 제도 운영 합리화·효율화

○ **(AI·데이터 기반 급여업무 관리 고도화)** 소득·재산 변화를 적시에 반영하면서 행정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신청·조사·결정·관리 등 급여업무 전 단계를 지원하는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한다.

- AI를 활용하여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는 신속하게 상담·안내하고, 반복적·소모적인 행정업무를 지원하도록 하여, 담당 공무원은 취약계층 방문·상담 등 현장 중심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 개선 사례

▲ (현행) 복지대상자 규모의 지속적인 증가와, 소득재산 변동에 따른 반복적인 조사와 소명 요청으로 인해 국민 불편과 공무원의 행정부담 지속 증가

↓

▲ (개선) '29년까지 ① 생성형 AI 기반 맞춤형 상담, ② 증빙자료 자동 검증 등 행정업무 지원, ③ AI 기반 데이터 분석 및 급여 과오지급 관리체계 마련 등을 통해 국민의 불편과 현장 공무원의 부담을 완화

○ **(필요한 의료보장 강화 및 과다이용 유발 구조 개선)** 중증·필수진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병원**과 **공공기능**을 수행하는 **민간병원**의 **2·3차 진료**를 **활성화**한다. 또한 2027년부터 **입원환자 식대**를 **건강보험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외래 혈액투석 등 **지속 관리필요 항목**의 **수가**를 **개선**해 건강보험과의 보상격차를 줄인다.

- 과잉진료를 줄이기 위해 **경증질환** 중 **과잉진료 우려**가 있는 **항목**을 **집중 점검(모니터링)**하고 **급여기준**을 **강화**한다. 부적정 진료 등 방지를 위해 의료기관 **현지조사**와 **분석심사**도 **확대**한다.

- **치료 중단자, 과소 이용자** 등을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필요한 치료를 제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의료필요도를 넘어서는 **과다이용에 한해 선별하여 집중 관리***한다.

* 외래·입원·투약 일수 구분 관리, 외래이용 180일 초과(상위 2%) 시 선택의료급여기관 지정·이용, 300일 초과(상위 0.3%) 시 본인부담 차등제 적용, 다제약물 관리 사업 시행 등

○ **(자활인프라 고도화)** 자활사업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자활복지개발원-광역자활센터-지역자활센터 간 역할을 정립**하고, 지역유형별 자활사업 여건을 고려하여 **농촌형 지역자활센터의 기능 개편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한다.

- 이와 더불어, 그간 자활사업의 성과로 측정되지 못했던 자활사업을 통한 사회적 배제 완화, 지역사회 기여 등 **자활사업의 사회적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사회통합지표를 개발**한다.

○ **(의료급여 전달체계 개선) 지방정부**와 **시민사회**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중앙·지방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역할을 **개선**한다.

- 또한 **지방정부**가 질병 예방과 건강관리, 퇴원 후 재가 정착 지원 등 **수급자의 건강한 삶을 적극적·주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 사업평가 기준**을 **개편**하고 **포상금 등 유인책을 확대**한다.

- **건강관리와 지역자원·서비스 연계자로서 의료급여관리사의 역할**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전문교육**을 강화하고 **인력**을 **약 300명 늘린다.**

5 [중장기]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미래지향적 발전 체계 구축

○ **(미래기획단 구성·운영)** 1인 가구 증가와 고령화 등 인구·사회 구조 변화에 대응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중장기 발전과제 도출**을 목표로 '(가칭)기초생활보장 미래기획단'을 구성·운영한다. 기획단은 **제도 이용자와 지방정부 등 현장 의견을 수렴**해 다음 과제를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 미래기획단 주요 논의 과제(안) >

· **다른 소득보장제도와의 역할 정립** : 기초연금, 근로장려금 등 관련 제도와의 정합성을 고려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역할 및 기능 검토

· **급여별 보장과 운영 방식 개선**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의 보장 수준 점검 및 관련 제도와의 연계 개선 방안 검토

· **가구 형태와 생활 여건 변화를 반영한 기준 개선** : 1~2인 가구 증가, 저소득층 자산격차 심화 등 사회 구조·환경 변화를 고려한 개선방안 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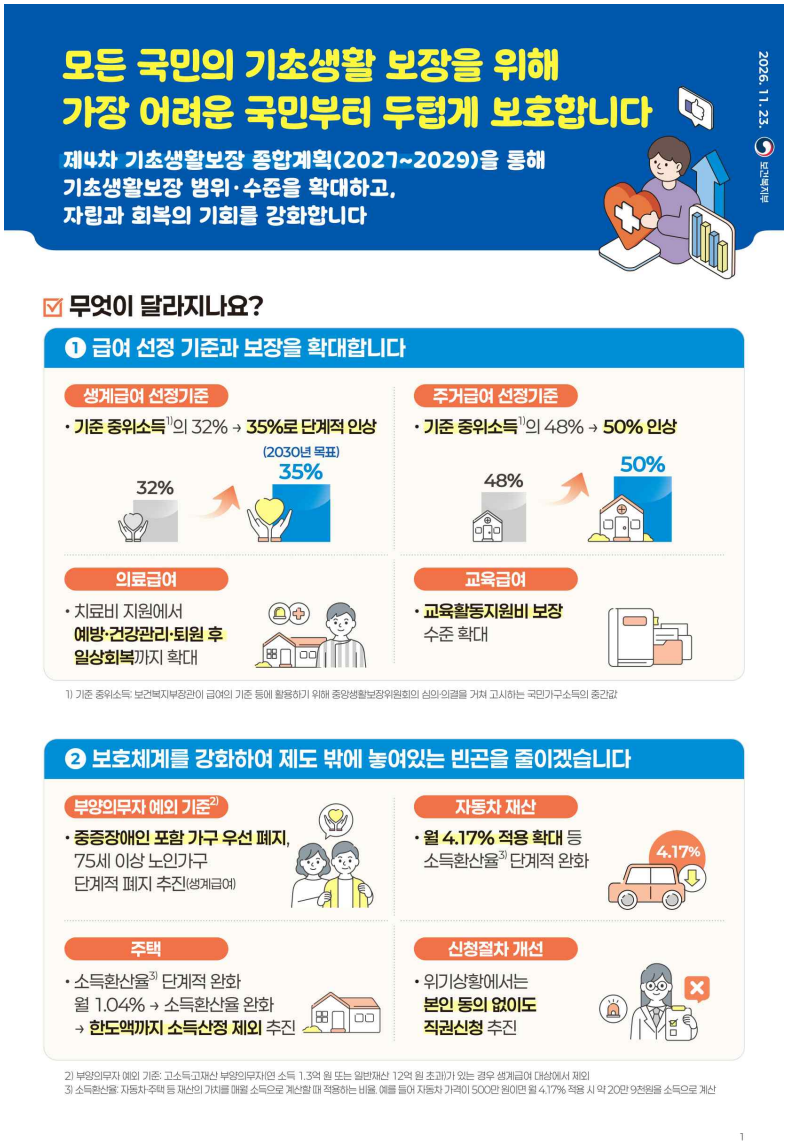
□ 정은경 장관은 "**제4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은 **최근 K자형 양극화가 기본생활 및 삶의 기회에 대한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가장 어려운 국민의 생활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 과제를 담았다"라면서, "정부는 제4차 종합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기초생활보장제도가 **국민의 기본생활 보장을 위한 사회안전매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자립과 회복의 기회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제도의 미래지향적 발전체계도 구축**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제4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주요 내용
2. 3년 후 달라지는 모습(안)
3. 제4차 종합계획으로 달라지는 주요 사례
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요
5.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기준

<별첨> 1. 제4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7~2029) 요약본
2. 제4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7~2029)

담당 부서 <총괄, 생계급여>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책임자	과 장	김은영 (044-202-3050)
		담당자	사무관	이현희 (044-202-3056)
<자활급여>	보건복지부 자활정책과	책임자	과장	김수환 (044-202-3070)
		담당자	사무관	김태경 (044-202-3073)
<의료급여>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책임자	과장	강 준 (044-202-3091)
		담당자	사무관	한혜원 (044-202-3087)
<주거급여>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책임자	과장	조성태 (044-201-4530)
		담당자	사무관	윤현식 (044-201-3358)
<교육급여>	교육부 학생지원총괄과	책임자	과장	나현주 (044-203-6521)
		담당자	사무관	김미희 (044-203-6529)

붙임1 제4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주요 내용



❸ 빈곤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갑작스러운 위기에 더 신속하게 대응합니다

- 소득·재산기준 단계적 완화 등 **긴급복지 지원제도 개선**
- 위기상황에 신속히 지원하는 **'우선드림'(30만 원) 신설**
- 반복적으로 위기에 처하는 가구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고 **지속 지원**(통합사례관리)






❹ 일을 통한 실질소득 증대를 보장하고 자립을 적극 지원합니다

청년 대상

- **자립이행 특례**
  - 소득이 늘어도 자립 여건 마련 시까지 의료급여 지원을 유지하는 **자립이행 특례** 도입 검토
- **생계급여 직접 지급**
  - 부모와 따로 사는 경우, 본인 몫의 **생계급여 직접 지급** 추진
- **자산 형성 연계 강화**
  - 근로소득에 대한 **적립금 매칭 지원 방안 마련**





중·장년

- **근로소득 공제** 및 **특화 자활근로모델 개발** 등 근로유인 강화방안 마련

공통

- **맞춤형 자활지원체계 개편**
  - 참여자의 **자활역량·의지·환경을 고려**한 자활 지원
- **자산형성 확대**
  - **가입자 규모 확대, 탈수급지원금 지급 검토**







2

붙임2 3년 후 달라지는 모습(안)

분야	추진 과제	2026년 현재
급여 선정·보장 기준 확대	**생계급여 선정기준 상향**	**기준 중위소득 32%**
	예방·관리부터 일상복귀까지 이어지는 건강보장 전환	(예방·관리)**예방가능입원 2,068명** (10만 명당) (재가정착)**재가복귀 3,000명**
	주거여건반영 보장성 강화	주거급여 수급자 수 **171만 가구** 임차료·수선유지비 지원
	교육급여 보장수준 확대	최저교육비의 **91% 지원**(고등)
보호체계 강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생계급여 수급가구 수 **146만 가구** 의료급여 수급자 수 **168만 명**
	재산의 소득환산체계 재설계	자동차재산 ▲ **소득환산율 월 100%** ▲ **예외적으로 4.17% 적용** 주거용재산 **소득환산율 월 1.04%**
	신청주의 한계 보완	수급자 명시적 동의가 있어야 수급 신청
	긴급복지 기능 강화	위기상황 현장 확인 후 지원 재산기준 ▲ **일반재산 2.4억 원** ▲ **생활준비금 기준중위 100%** 긴급복지 지원으로 관리 종료
	연속적 의료안전망 구축	**탈수급자 3.8만 명**

실질 소득 증대 및 자립 기반 강화	**분리거주 저소득 청년 보장**	부모와 거주지 달리해도 **생계급여 같이 지급**	거주지 달리하는 경우 **본인 몫의 생계급여 직접 지급**
	대상별 근로유인 강화	(청년)60만원 + 30% 공제 (중장년)공제율 **30%** 일괄 적용 (노인)일자리 참여 제한	(청년)**근로소득-자산형성 연계** (중장년)공제 확대 (노인)**공익활동형 참여 허용**
	대상별 특화 자활지원	**청년특화** 자활참여 **1,200명**	청년특화 자활참여 **2,200명**
	맞춤형 자활지원체계	**자활성공률 18%**	**자활성공률 21%**
	자산형성지원	청년내일저축계좌 누적 가입자 **18.7만 명**	청년내일저축계좌 **누적 가입자 24만명 이상**
	자활기업지원	자활기업 **977개**	자활기업 **1,300개**
제도 운영 합리화 · 효율화	**급여업무 관리 고도화**	복지업무 규모 및 제도 복잡성 증가로 **지자체 업무부담 가중**	급여 신청서류 검증 등 **복지행정 업무의 50% 이상 AI 자동 처리**
	필요한 의료보장 강화 및 과다이용 유발 구조 개선	**미충족의료 경험률 11.5%** 외래 300일 초과자 **1,917명**	**미충족의료 경험률 10%** 외래 300일 초과자 **1,530명(-20%)**
	전달체계 개선	사회적 자활 미고려 의료급여 사례관리 대상 **19.5만 명** 주거와 타 복지서비스 미연계 교육급여-바우처 이중 신청	사회적 자활 **참여자 자활의지 제고,** **사회 통합 효과 측정** 의료급여 사례관리 대상 **21.5만 명(+10%)** 돌봄 등 **타 복지서비스** **발굴·연계 확대** 교육급여-바우처 **동시 신청**

붙임3 **제4차 종합계획으로 달라지는 주요 사례(예시)**

1 생계급여 보장기준 실질적 개선

< 현재 >

■ 서울시에 홀로 거주하고 있는 1인 가구 B씨(65세)의 월 소득 인정액은 90만원이다. 이는 '27년 1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인 87만 5,533원을 소폭 초과하는 금액으로, B씨는 홀로 사는 생활에 어려움이 있어도 생계급여를 지원받지 못한다.

< 개선 사례 >

■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기준 중위소득의 35%까지 확대되면, '27년 기준과 동일한 기준 중위소득을 적용할 때 1인가구 선정기준은 약 95만 8천원으로 높아진다. 소득인정액이 월 90만원인 B씨는 상향된 선정기준 이하에 해당하여 생계급여 지원대상으로 포함된다. 이에 따라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월 약 5만 8천원의 생계급여 및 수급자격으로 인한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앞으로 생계급여 선정기준 단계적 상향을 통해 더 많은 수급자에게 생계급여를 지원하고 수급자의 최저생활 보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 '27년 선정기준 32%시 1인가구 생계급여 수준 87만 원/ 선정기준 35%시 95만 원

2 예방 · 관리부터 일상복귀까지 이어지는 건강보장 전환

< 현재 >

■ 66세 의료급여 수급자 B씨는 허리·무릎 통증으로 병원을 자주 방문해 물리치료를 받고 있다. 치료를 받으면 통증이 완화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아파 병원을 찾는 일이 반복되고 있으며, 평소 자신에게 맞는 운동이나 생활습관 관리 방법을 알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에는 뇌졸중으로 입원 치료를 받으며 간병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으나 간병비 부담이 크고 퇴원 후 재활치료와 건강관리를 이어가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 개선 사례 >

■ B씨는 확대된 국가건강검진을 통해 건강상태를 보다 면밀히 확인하고,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에 참여하여 자신의 건강상태에 맞는 운동과 생활습관 관리 방법을 배우게 되었다. 또한 뇌졸중으로 입원하여 의료·간병 필요도가 높은 환자로 인정된 경우 간병비를 지원받아 경제적 부담을 덜고, 퇴원 후에도 지역책임의료기관에서 제공하는 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신체 기능을 회복하고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다.

3 주거여건을 반영한 보장성 강화

< 현재 >

■ 충남 천안시 소재 임대주택(월 임대료 27만원)에 거주하고 있는 3인 가구의 가장 C씨(41세)는 월 소득인정액이 약 275만원으로, '27년 주거급여 선정기준인 274만 4,684원을 초과하여 주거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다. 최근 물가 및 월세 상승으로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있지만, 선정기준을 소폭 초과하여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상황이다.

< 개선 사례 >

■ 만약 주거급여 선정기준이 기준 중위소득의 49%까지 확대될 경우, '27년 기준과 동일한 기준 중위소득을 적용할 때 3인가구 선정기준은 약 280만원으로 높아진다. 이에 따라 C씨는 새롭게 주거급여 대상에 포함되어 실제 납부하는 월 임대료 27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앞으로 주거급여 선정기준 상향 및 기준임대료 현실화 등을 통해 더 많은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이 완화되고 주거 안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27년 기준 중위소득 48%이하 3인가구 선정기준은 274만원/ 중위소득 49%이하 가정 시 280만원

4 교육급여 최저보장 확대

< 현재 >

■ 학부모 D씨는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키우면서 교육급여를 수급 중이다. 그동안 교육급여가 지속적으로 인상되어 자녀들을 교육시키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지만, 최근 치솟는 물가와 디지털화하는 교육환경을 생각하면 현재의 교육급여로는 자녀들이 원하는 다양한 교육활동을 지원해주기 어려워 고민이 많은 상황이다.

< 개선 사례 >

■ '27년부터 교육활동지원비가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되어 중학생 71만 4천원, 고등학생 94만 5천원으로 총 165만 9천원 지원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평소에 구입하지 못했던 온라인 콘텐츠를 구입하여 학습하고, 자녀가 희망하는 음악학원도 보내주는 등 자녀들이 원하는 교육활동 지원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5 생계 ·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완화

< 현재 >

■ 등록 중증 장애인 E씨는 미성년자 자녀 1명과 함께 살고 있는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근로로 받는 월 120만원의 소득으로 근근히 생계를 꾸려가고 있다. 부양의무자인 아버지와 어머니가 노후 거주용 주택(12억 초과)을 가지고 있어 생계급여 수급이 받지 못해 생활고를 겪고 있다.

< 개선 사례 >

■ '27년 하반기부터는 E씨처럼 중증 장애인이 포함된 가구에 대해 생계·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을 전면 폐지한다. 이에 중증 장애인이 포함된 가구와 생계나 주거를 달리하는 부양의무자에 대해서는 연 소득 1.3억원 또는 일반재산 12억원 초과 시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하는 예외 기준도 적용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중증 장애인인 E씨는 부양의무자인 부모님의 주택 가액과 관계없이 생계·의료급여를 받아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6 재산의 소득환산체계 재설계 기반 마련

< 현재 >

■ 가족 없이 홀로 지내며 어려운 생계를 이어가던 F씨는 2011년에 구입한 노후된 그랜저(2,359cc) 차량을 이용해 어렵게 출퇴근을 하고 있었다. 생활고로 인해 생계급여를 신청하려 했으나, 차량가액이 400만 원에 불과한 노후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배기량이 2,000cc를 초과한다는 이유만으로 차량가액 전체(400만 원)가 월 소득으로 잡히게 되어, 결국, 실제 소득은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서류상으로는 월 400만 원의 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생계급여 지원 대상에서 안타깝게 탈락하게 되었다.

< 개선 사례 >

■ 그간 배기량·연식·차량유형, 가구유형 및 규모 등에 따라 환산율을 달리 적용하던 자동차 소득환산 기준이 차량가액 중심으로 단순화됨에 따라, F씨의 차량은 더 이상 배기량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고, 월 4.17%의 소득환산율을 적용받게 되었고, 그 결과, 400만 원의 차량가액이 월 166,800원의 소득으로 환산되어 소득 인정액이 크게 낮아졌고, 월 약 70만 원의 생계급여를 수급하게 됨으로써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기본적인 삶의 질을 회복하게 되었다.

7 신청주의 한계 보완

< 현재 >

■ 자살시도자 G씨는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고 최근 소득을 상실한 상황으로, 지방정부에서 생계에 어려움이 있음을 확인하여도 대상자에게 생계급여 신청에 대한 동의를 받기 어려워 직권신청할 수 없어 생계유지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 개선 사례 >

■ 지방정부에서 대상자 확인 후 생계급여가 필요한 경우 수급권자의 동의가 없어도 직권신청을 통해 소득·재산, 부양의무자 등 조사 후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8 위기가구 예방 · 회복 지원 강화

< 현재 >

■ 58세 H씨는 작은 식당을 운영하다 올해 초 손님이 줄고 임차료 부담이 커져 가게 문을 닫았다. 폐업과 함께 수입이 끊기면서 모아 둔 돈이 바닥나 월세와 공과금도 밀릴 위기인 상황이다. 오래 전부터 뇌전증을 앓아 온 H씨는 발작을 막기 위해 매일 항경련제를 복용해 오고 있으며, 약을 갑자기 끊으면 발작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의사의 당부를 늘 새기며 지내왔다. 그런데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이 곧 떨어지는데, 진료를 받기 위한 진료비와 처방약을 구입할 돈이 없다. 행정복지센터에 긴급복지를 요청했지만, 결정되기까지 3일이 걸린다는 안내를 받았고, 내일부터 3일 연휴라 연휴 사이에 약이 떨어질 상황이라 H씨는 불안한 마음에 밤잠을 이루지 못했다.

< 개선 사례 >

■ '27년부터는 읍·면·동 담당자가 생활실태 등 현장확인을 거쳐 즉각적인 위기상황 해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시·군·구 결정 전에 30만원을 즉시 지급할 수 있다. H씨는 행정복지센터를 찾은 당일 30만원을 우선지급 받아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처방약을 구입할 수 있게 되어, 치료를 이어갈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휴·폐업으로 소득을 상실하여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로 생계지원 대상자로 결정되어 3개월간 월 80만원을 지급(30만원은 생계지원에서 차감)받고, 동시에 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을 연계하여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책정될 수 있다.

9 연속적 의료안전망 구축

< 현재 >

■ 28세 장애인 의료급여 수급자 I씨는 정기적인 병원 진료와 약물치료를 받고 있다. 최근 취업 기회가 생겨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다는 기대가 크지만, 취업 후 소득이 증가해 의료급여 수급 자격을 잃게 되면 병원비와 약값 부담이 커질까 걱정이다. 특히 취업 초기에는 생활비와 주거비 등 지출도 많아, 치료비를 부담하면서 안정적으로 직장생활을 이어갈 수 있을지 고민이다.

< 개선 사례 >

■ '자립이행 특례'가 도입되면서 I씨는 취업 후 소득이 증가해 의료급여 수급 기준을 초과했지만 일정 기간 의료급여를 계속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병원비와 약값에 대한 부담을 덜고 필요한 치료를 중단 없이 이어가면서 직장생활에 적응할 수 있게 되었다. I씨는 의료비 부담에 대한 걱정을 줄이고, 취업으로 얻은 소득을 생활 안정과 저축에 활용하며 경제적 자립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다.

10 맞춤형 자활지원체계 개편

< 현재 >

■ 조건부 수급자 J씨는 반복되는 취업 실패로 자활 의지가 낮아진 상태로 조건이행을 위해 자활사업에 참여하기 시작하였다. 그간의 취업실패로 인해 자신감이 매우 낮아진 상태지만 자활사업에 참여하면 자신에 맞는 자활지원서비스를 받아 취업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품었다. 하지만 막상 자활사업에 참여하니 자신의 현재 자활의지나 역량, 희망 자활경로에 대해 정밀한 고려 없이 현재 공석이 있는 음식점 사업단에 배치되었다. 취업을 희망하던 J씨는 자신의 상황에 맞는 자활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사회에 다시 나갈 수 용기를 차근차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개선 사례 >

■ 음식점 사업단에서 자활근로 중이던 J씨는 자립역량·환경확인을 거친 결과, 취업을 희망하지만 자활의지부터 향상할 필요가 있다고 확인되어 지역사회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근로준비형 사업단에 배치되어 심리정서지원 서비스를 연계받으며 1년 간 자활의지를 높였다. 이후 다시 취업을 준비할 용기가 생긴 J씨는 취업도전형 사업단으로 단계적으로 이동하여 지역 내 자활기업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며 취업 경험을 쌓으며 취업준비를 시작하고 있다.

11 자산형성지원 강화

< 현재 >

■ 사회초년생 K씨는 입사하고 얼마 되지 않아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가입하여 성실하게 본인 적금을 납부해 왔다. 처음에는 대출금을 갚기에도 빠듯한 월급으로 저축까지 하기가 힘들었으나, 조금씩 쌓이는 금액을 보면 신이 났다. 그러나 다니던 회사가 갑작스럽게 폐업하여 실직하였고, 취업을 준비하고 있으나 당장의 대출금도 갚지 못하게 되며 적금 계좌가 압류되었다. K씨는 결국 만기까지 반년 남은 청년내일저축계좌를 해지할 수밖에 없었다.

< 개선 사례 >

■ K씨는 실직 후 계좌에 적립금을 납입할 수 없게 되자 사례관리 대상자로 발굴되어 1:1 사례관리를 통해 저소득층 청년 대상의 금융서비스를 연계받았고, 계좌 압류 시에도 특별적립중지가 가능하여 계좌를 중도해지 않고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12 필요한 의료보장 강화 및 과다이용 유발 구조 개선

< 현재 >

■ 52세 의료급여 수급자 L씨는 고혈압과 당뇨병 등 복합만성질환으로 여러 종류의 약을 장기간 복용하고 있다. 정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해 약을 처방받고 있지만, 실제 병원 방문 일수가 많지 않아도 투약일수가 급여일수에 합산되어 연장승인과 선택의료급여기관 지정 등 병원 이용을 위해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하는 부담이 있다. 또한 여러 의료기관에서 처방받은 약을 함께 복용하고 있어 약물 간 중복이나 부작용이 걱정되지만, 복용 중인 약의 중복 여부와 부작용 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받을 기회가 부족하다.

< 개선 사례 >

■ 외래·입원·투약 분야별 관리로 L씨는 장기간 약을 복용한다는 이유로 발생하던 급여일수 관리 부담을 덜 수 있게 되었으며, 외래 이용 일수를 기준으로 자신의 의료이용 수준을 쉽게 파악하고 스스로 의료이용을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다제약물 관리사업을 통해 복용 중인 약의 중복 여부와 부작용 위험 등을 점검받고, 올바른 복약 방법에 대한 상담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를 통해 L씨는 필요한 약물치료를 지속하면서 보다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만성질환을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13 의료급여 전달체계 확충

< 현재 >

■ 45세 의료급여 수급자 M씨는 정신질환으로 정기적인 치료를 받고 있으며 혼자 생활하고 있다. 치료를 지속하면서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도움이 필요하지만, 의료기관과 지역사회 지원 기관 간 연계가 충분하지 않아 필요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 개선 사례 >

■ 지자체가 M씨의 건강상태와 생활 여건을 적극적으로 살피고, 의료급여관리사를 통해 필요한 지원을 파악했다. 또한 지역 내 취약계층 의료협력체계를 통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을 연계하고, 치료 및 서비스 이용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M씨는 필요한 치료와 일상생활 지원을 함께 받으며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 되었다.

붙임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요

□ **(목적)**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유도

* 근거법령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999.9.7 제정, 2000.10.1. 시행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을 위해 2014.12.30. 개정, 2015.7.1. 시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수급자 선정)** ① **소득인정액** 기준 ② **부양의무자 기준** 동시 충족

①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

* 생계급여 32%,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8%, 교육급여 50%

② 부양의무자(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없는 자 및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 주거('18년)·교육급여('15년)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생계('21년)는 고소득·고재산 예외 규정만 적용(연소득 1.3억원 또는 일반재산 12억원)

□ **(급여) 생계·의료·주거·교육·자활·장제·해산 등 총 7종**

- **(생계)** 중위소득 32%에서 소득인정액 차감 후 지원(보충급여)
- **(의료)** 질병, 부상 등에 대해 의료 서비스(진찰, 치료 등) 제공
- **(주거)** 임차료(임차가구), 주택 개량(자가가구) 지원(국토부 소관)
- **(교육)** 학생 수급자의 입학·수업료, 학용품비 등 지원(교육부 소관)
- **(해산·장제)** 출산시 1인당 70만원, 사망시 1인당 80만원 지급
- **(자활)**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이 자활할 수 있도록 지원

□ **(절차)** 상담·접수(읍면동) → 자산조사·보장결정, 급여 지급(시군구)

□ **(예산)** '26년 기초생활보장제도 예산 약 23.4조원(국비 기준)

* 생계 9.2조원, 의료 10.1조원, 주거 3.2조원, 교육 0.2조원, 자활 0.8조원, 해산장제 0.05조원

□ **(수급자 현황) '26.6월말 기준 294만 명**(생계 194만, 의료 160만, 주거 277만, 교육 30만)

붙임5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기준

< 2026년도 및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 >

(단위: 원/월)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27년	**273만 6,042**	**448만 645**	**571만 8,091**	
'26년	256만 4,238	419만 9,292	535만 9,036	
증가액 (27년-'26년)	17만 1,804	28만 1,353	35만 9,055	

< 2026년도 및 2027년도 급여별 선정기준 >

(단위: 원/월)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생계급여 (중위 32%)	**'27년**	**87만 5,533**	143만 3,806	182만 9,789
	'26년	**82만 556**	134만 3,773	171만 4,892
의료급여 (중위 40%)	**'27년**	**109만 4,417**	179만 2,258	228만 7,236
	'26년	**102만 5,695**	167만 9,717	214만 3,614
주거급여 (중위 48%)	**'27년**	**131만 3,300**	215만 710	274만 4,684
	'26년	**123만 834**	201만 5,660	257만 2,337
교육급여 (중위 50%)	**'27년**	**136만 8,021**	224만 323	285만 9,046
	'26년	**128만 2,119**	209만 9,646	267만 9,518